

김해시니어클럽

『2021년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‘시니어연금가이드’ 참여자』 모집 공고

김해시니어클럽 『2021년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‘시니어연금가이드’ 참여자』 모집에 따른 공개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5월 14일

(재)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



1 모집분야 및 인원

가. 일반사항

접수처(수행기관)	사업명	근무지(수요처)	인원(명)	대상사무
김해시니어클럽	시니어 연금가이드	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	2	민원응대 및안내보조
총 계			2	

나. 근무기간 : 2021.6.1.~2021.12.31.(7개월)

2 응시자격

가. 참여조건 : 공고일 현재 만60세 이상 김해시민

※신규 시범사업으로 만60세 이상 지원 가능

나. 참여제한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
 - ※ 의료급여, 교육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
-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
 - ※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
-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인력파견형사업단 제외)
-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

3 모집일정

가. 모집일정

구 분	일 정	방 법	비 고
모집 공고	21.5.14.(금)~21.5.24.(월) 11일간	재단 및 기관 홈페이지	
신청서 접수 및 면접심사	21.5.17.(월)~21.5.24.(월) 5일간	방문접수 ※코로나 방역수칙 준수하여 접수 진행	토,일,공휴일 제외
적격여부 심사	21.5.25.(화)~21.5.28.(금) 4일간	참여제한 등 자격여부 개발원 심사	
최종 합격자 발표	21.5.31.(월)	수행기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	
근무예정일	21.6.1.(화)	변동 가능	

※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최종 합격자 선발 후 선발 점수가 낮은 참여자를 대기자로 두어 기존 참여자 중도 포기 시, 별도의 모집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선발 점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발 진행

나. 심사내용

구 분	심사내용	심사기관
신청서 접수 및 면접심사	-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확인 (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작성) -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선발기준표 의거 활동역량, 인성역량, 대인관계역량 등 심사	김해시니어클럽
적격여부 심사	- 참여제한자 등 적격여부 심사	한국노인 인력개발원

4 참여신청서 접수

가. 접수기간 : 21.5.17.(월)~21.5.24.(월), 5일간(토,일,공휴일 접수불가)

※ 근무시간(09:00~18:00) 내에만 접수 가능

나. 접수방법 : 방문접수

다. 접수처

수행기관명	주소	전화번호
김해시니어클럽	김해시 흥동로 150	055)310-3300

라. 지참서류 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(최근 3개월이내)

5 보수 및 복무

가. 참여기간 : 21.6.1.~12.31.(7개월)

나. 참여시간 : 평일3시간 주5회, 월 60시간 이상

(월~금요일 09:00 ~ 18:00 중 수요처와 조정, 시간외 근무실시가능)

다. 급 여: 월712,800원{기본급(시간당 단가 9,114원×60h이상=최대594,000원)
+1개월 만근시 발생 주휴수당(118,000원)} ※연차수당 별도 지급

라. 근무처 :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

6 가산 부여

가.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(사회서비스형) 선발기준표 의거
유관자격증 소유자 ☞ 가산점 15% 부여

가점 부여 유관자격증

- 관련분야 국가자격(전문, 기술) 보유 : 자격증 제출
 -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 분야 자격은 관련 분야 자격으로 모두 인정
 - 운전면허, 원동기면허증 등의 자격이 근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자격보유로 인정하지 않음
 - 국가전문자격제도
 - : 국가기술자격이 주로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, 기능 및 서비스분야의 자격인 반면 국가자격은 주로 전문서비스분야(의료, 법률 등)의 자격으로 개별부처의 필요에 의해 신설, 운영되며 대부분 면허적 성격을 지님
 - * 간호사, 간호조무사, 물리치료사, 사회복지사 1급, 의사, 요양보호사, 임상병리사, 청소년 상담사 1,2,3급, 보육교사, 교원자격증, 안전보건관리 관련 자격증 등
 - 민간자격증은 불인정
- 고용노동부에서 국비지원하는 직업훈련 이수(수료)증 인정
 - 구직자 또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에서 국비지원으로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(수료)한 경우 확인증(이수증, 수료증 등) 제출
 - * (교육목록 확인)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내 직업훈련정보